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7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 : 김수흥·정성호·김경만

윤준병 · 김태호 · 박재호

신동근 • 박홍근 • 김성주

양경숙 · 김병욱 · 한병도

양향자 · 민홍철 · 어기구

아호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영수증은 종이로만 발급되고 기부금발급 총액만 신고함으로써 기부금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 기부단체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의 상호 비교가 곤란하고, 기부자 중심의 부당공제 여부에 국한하여 검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짓 기부금영수증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안 제112조의 2).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이하 이 조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	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u>
	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
	수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기부
	금영수증"이라 한다)의 경우에
	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
	<u>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	
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	
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③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	

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